

이러한 해결 방안은, '위안부'문제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거 및 현재의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의 최소한을 확인한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과 처벌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최대의 피해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2000년 법정'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배상문제의 경과와 현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문제 제기의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 내용은, 1) 범죄사실의 인정, 2) 범죄사실에 대한 전모의 자진 공개, 3)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 4)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의 건립, 5)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6) 역사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교수의 보고서³⁾,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보고서⁴⁾ 등에 의해서 확인 내지 지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애초 일본정부 및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했던 일본정부는, 1992년 1월 11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명백한 증거자료⁵⁾를 발견하여 신문에 공개한 이후에는, 태도를 일변하여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1992년 7월 6일과 1993년 8월 4일 2차에 걸친 진상조사결과를 공표하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후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종래의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일본정부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논거는, '모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그에 따른 개별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끝났다'라는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으로 줄여 씀)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

3) E/CN.4/Sub.2/1992/8

4)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1994

5) 이 자료들에 기초한 요시미 교수의 '위안부'에 관한 분석은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참조.

인의 청구권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과 관련해서도 문제6)가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정부 자신의 다른 주장과 명백히 충돌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을사늑약] 및 1910년의 [합병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⁷⁾, 일

6)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각주 2) 참조.

7) 물론 필자는 이 전제에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그 조약들이 무효라고 판단한다. 첫째는 그 조약들이 조약체결자인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이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을사늑약」의 경우 현저하다. 그 강박의 사례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을 들면, 1) 1905년 11월 15일 특파대사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의 황제에 대해, 그 초안을 제시하면서 "(이 안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帝國政府의 確定된 방침이므로 今日 중요한 것은 단지 陛下의 決心如何이다. 이것을 承諾하든지 혹은 拒否하든지 마음대로지만, 만약 拒否하면 帝國政府는 이미 決心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컨대 貴國의 地位는 이 條約을 締結하는 것 이상으로 困難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층 不利益한 結果를 覺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협박한 것(『伊藤大使內謁見始末』(1905.11.15), 神川彦松監修·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第6卷(上), 巖南堂書店, 1964, 25면), 2) 11월 17일 오후 대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본회의장 안으로 칼을 찬 일본헌병과 경찰들이 몰려 들었고, 회의장 주변과 궁궐 안팎에는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일본공사관 앞 등 서울 시내 전역을 무장한 일본군이 시가행진했고, 시내의 각 성문에는 야포와 기관총까지 갖춘 부대가 배치되는 등 대대적인 무력시위가 있었던 것(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 까치, 1995, 49-62면 참조), 3) 당시 이토오의 한 수행원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7일의 회의에서 이토오의 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던 韓圭高 참정대신이 별실로 물러날 때 "이토오씨는 다른 이들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때를 쓸 것 같으면 죽여 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바야흐로 (황제의) 재가가 나서 조인의 단계가 되어서도 참정대신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의아해하자 이토오씨는 중얼거리듯이 '죽였겠지'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열석한 각료중에는 일본어를 해독하는 자가 2, 3인 있어서 이를 듣고는 곧 그 옆사람에게 다시 그 옆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여 조인은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끝나 버렸다"라는 것(西四辻公堯大佐, 『韓末外交秘話』, 1930. 中塚明, 『近代日本と朝鮮』[第三版], 三省堂, 1994, 97-98면에서 재인용) 등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제외국에 그 뜻을 전했다는 것도(이태진, 위의 책, 221-284면 참조) 무효의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둘째는 그 조약들이 당시의 국제적인 관행 및 그 이전의 한일간의 관행에 비추어 성립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李泰鎮, 『韓國併合は成立してない』上·下, 『世界』 1998.7·8; 같은 이, 『韓國侵略に關連する諸條約だけが破格であった』, 『世界』 1999.3. 참조).

위의 조약들이 무효였다면, 일제의 35년간의 지배 전체가 불법이 된다. 따라서 그 시기 동안 한국인에게 가해진 일제의 침해에 대해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에 의해 어떤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제에 의한 35년간의 한국강점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에 지급한 자금도 결코 '배상금'이 아니며, 단순히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자신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배상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1998년 8월의 [맥두걸보고서]⁸⁾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본정부가 제시한 자료에만 근거하더라도,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끝났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1993년의 진상조사결과 공표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⁹⁾

둘째, 일본정부는, 일본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소일공동선언]의 해석에 관해,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국가간의 배상문제는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안부'피해자 개인의 대일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인도적 견지'를 내세우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반관반민의 단체를 통한 '위로금'지급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대협이 명백히 지적한 것처럼, [국민기금]에 의한 해결이란,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술수"¹¹⁾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에 관한 요구를 금전의 문제로 치환해 버림으로써 피해자들에

지금 당장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8) E/CN.4/Sub.w/1998/13

9) 이것의 당위성은, 지난해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에 서명·발표된 「공동선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그 「공동선언」(http://www.mofat.go.kr/ - 외교자료실 - 외교문제해설 - 1998년 - 98년 제9호)에서, "오부찌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 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대표가 공식의 문서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배상책임 또한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 田中宏, 「日本の戦後補償と歴史認識」, 粟屋憲太郎 외5, 『戦争責任・戦後責任』, 朝日新聞社, 1994, 61-62면.

11) 「일본군'위안부' 민간기금 위로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4.8.23.

게 추가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이기도 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민기금]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¹²⁾이, 그 '진의'와는 상관없이 범죄적 행태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일본국민의 반성과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국민기금]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과 일본총리 이름의 편지 전달¹³⁾을 왜 방치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정부의 문제성은 일본의 사법부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1999년 1월 현재 일본의 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위안부'관련 소송은 모두 8건인데¹⁴⁾, 그 중 피해자인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은 1998년 4월 27일의 아마구찌(山口)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関)지부의 판결¹⁵⁾ 하나 뿐이다. 게다가 시모노세키판결도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¹⁶⁾ 시모노세키판결이,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

12)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大沼保昭 외2,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東信堂, 1998 참조.

13) 1997년 1월 11일에는 「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피해자 7명을 만나 위로금 2백만원엔과 함께 전달한 하시모토 당시 총리의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해, 과거의 중군위안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보상이 행해지는 데 즈음하여, 저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소위 중군위안부문제,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해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소위 중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 속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들은,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에의 책임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당치않은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마음 속으로부터 빕니다. / 平成 8년 (1996) 일본국내각총리대신 / 橋本龍太郎 (『法學セミナー』 502, 1996.10., 22면.) 여기에는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일본정부가 이미 인정한 강제사실의 사실에 대해서조차 언급이 없다. 그리고, 「국민기금」을 전달하면서 왜 「일본국내각총리대신」의 편지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14) 이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지난 1월 22일 일본의 戦後補償問題を考える辯護士連絡協議會와 戦後補償ネットワーク가 공동주최한 공개포럼자료집, 『戦後補償裁判の現況と今後の課題』99 資料集에 실린 高木喜孝, 「戦後補償裁判の現況」; 「戦後補償裁判一覽表」; 「戦後補償裁判分野別一覽表」; 「解決への言及のあった判決」 참조.

15) 판결의 전문은, 戦争責任を問う・關釜裁判を支援する會, 『關釜裁判判決全文』, 1998 참조. 그리고 한국어 번역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자료집』 10, 1998의 필자의 번역문 참조.

16) 시모노세키판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 『人權과正義』 제167호, 1998.11. 참조.

해이며 그에 대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시모노세키판결에서도, '위안부'를 강요한 원래의 침해행위가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았으며, 불처벌에 따른 배상책임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노세키판결은 일본의 사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이며 그것조차 상급심 판결에서는 번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법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국회 또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국회는, [일본국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시모노세키판결에서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기까지 했다. 물론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법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법안들¹⁷⁾은 어디까지나, '실태조사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 5월 24일에는 이른바 [가이드라인관련법]¹⁸⁾이 일본의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국기국가법안] 또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곧 [일본국헌법]을 떠받쳐 온 전쟁방기(9조)라는 축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 그리고 상징천황(1조)이라는 또 하나의 축도 심각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축이야말로, 패전전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최소한의 표현이었다. 그 두 축이 건재할 때에도 과거청산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국회가, 허물며 그 두 축을 제거하였거나 제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더욱더 적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또한 문제의 해결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애초 이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한국정부는, 1991년에는 일본정부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고, 1992년에는 '실무대책반'을 설치하여 자체조사와 신고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서'로 발간했으며, 1993년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 출범 후인 1998년 5월에는, 피해자 1인당 국민성금 410만 8천원을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 3,560만 8천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

17) (각주 14)의 『資料集』의 「戰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調査會法案」과 「國立國會圖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참조.

18)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特集=新ガイドライン實施法の法的検討」, 『法律時報』 71卷 1號, 1999.1. 참조.

이 취해진 것일 뿐이며,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인식과 동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1905년 및 1910년의 한일간의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충돌한다. 그 조약들이 무효라면 일제의 한국강점은 불법이며 따라서 그 기간동안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일제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진 것은, 부채의 해결을 포함한 재산의 처리 및 양국간의 상업관계의 규율에 관한 것 뿐이며,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위안부'배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의 차원에서, [청구권협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의 개정 혹은 재체결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일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II. 처벌문제의 경과와 현황

범죄자 처벌은, 문제의 법적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초기의 단계에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의해서도 적극 제기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대협이 1993년 범죄자 처벌을 공식적인 요구사항 속에 포함시킨 이후, 이것은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맥두걸보고서]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즉 [맥두걸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를 강제한 행위는 "노예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법행위를 한 일본군 병사 개개인"과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장교 및 관료"와 "강간소(rape center)의 설치·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관계자를 소추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원칙이 존재하며, 어느 국가라도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의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국가의 재판소에서도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범죄자 처벌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검찰은, 1994년 2월 7일 피해자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접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당시 일본의 검찰이 제

시한 이유는 1) 시효의 완성, 2) 피고소인의 불특정, 3) 피고발 사실의 불특정, 4) 처벌조항의 불비였으나, 이 모두는, 당시 고소·고발장 접수에 동참했던 박원순변호사에 의해서도 충분히 반박된 것이지만¹⁹⁾, 특히 [맥두걸보고서]에 의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게다가, 범죄자 처벌은 배상과는 달리 한일간의 조약·협정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범죄자 처벌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처벌 자체가 새로운 침해를 구성하게 되며, 그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이 배상책임은 부작위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해제될 수 없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자 처벌에 관한 한국정부의 부작위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 역시 범죄자 처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위안부'문제를 "세계가 납득하는 형태"²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있는 범죄자로서 정대협 홈페이지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총리를, 지난 2월 26일 세계은행(IBRD)과 공동주최한 국제회의에 초대하여 '정치지도자회의'에서 기조연설까지 하게 하고 있는 데서²¹⁾ 명확하게 확인된다. 뿐만아니라, 한국정부는, 미국의 '위안부'관련 범죄자 입국금지조치를 계기로, 1997년 11월 18일 한국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998년 3월까지 입국금지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²²⁾,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명단 자체가 작성되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IV.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위안부'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저절로 명확해졌다. 우선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일본의 국회도 배상과 처벌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일본의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원래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19) 이에 관해서는 박원순, (각주 2), 461-464면 참조.

20) 「金대통령, “정신대 문제 해결돼야”, 『연합뉴스속보』 98.10.9. ; 「世界が納得できる解決を 慰

安婦問題で金大中・韓国大統領, 『朝日新聞』 98.10.9.

21) 「[시장경제회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개최, 『한겨레』 [인터넷판] 1999.2.26.

22) 「[법무부] 일본 전범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중, 『한겨레』, 1998.2.20.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청구권협정]의 개정이나 재체결도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국가기관들이 자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그 자체 충분하지도 못한 시모노세키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일본국회는 과거청산에 역행하는 법안들의 성립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리고 일본재판소는 시모노세키판결 이후에도 '위안부'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 놓음으로써,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한일간 과거청산의 "종결"을 공언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²³⁾

바로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시민들의 노력이다. 사실 시민들의 노력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잘 설명해 준다. 당초 법적 의미 자체가 불명확했던 '위안부'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바로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에 호응한 전문가들의 거듭되는 노력의 결과였다. 일본 국내에서의 문제 해결에 관한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시모노세키판결을 도출해 낸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이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도, 그리고 소송의 진행중에도, 일본의 재판소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대다수의 예상이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2000년 법정'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2000년 법정'은 바로 시민들의 노력의 결집된 場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국가기관들에 의한 해결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법정'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법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것은 시민들의 법정이기 때문이야말로,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한 그리고 최대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2000년 법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첫째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가 국제법위반의 범죄행위라는 점, 둘째 그에 대해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관련 국제법이론을 보다 정치하게 만들고, 진상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잘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맥두걸보고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미

23)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평트너십'을 실마리로 - 」, 『國際地域問題研究』(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제17권 제1호, 1999.3. 참조.

필요한 국제법이론은 확보되어 있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사실만으로도 위의 결과를 확보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세가지 중 범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특히 천황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범죄가 [대일본제국헌법]상 "統治權의 總攬者"였던 천황을 핵으로 하는 신권주의적 천황제²⁴⁾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책임을 물어야 할 히로히토(裕仁) 천황은 이미 죽고 없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위안부'문제를 천황 내지는 천황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상, 그 범죄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히로히토 천황을 구체적인 피고로 지목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판결 내지는 평결에서 그 범죄의 진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천황제의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영역인 국제법은 흔히 "형성중의 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제법이 아직 확립된 법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형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릇 법이란 애당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문제의 경우에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만큼의 '법적 정의'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특히 법학자와 법률가에게 요청된다. '성노예'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오랜 세월동안 자신들의 아픔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서야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선언"²⁵⁾해 달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면, 법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이에 관해서는 우선 金昌祿,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 『大日本帝國 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8. 참조.

25)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戰爭責任者의 處罰을 求める 告發狀」(2), 『法學セミナー』 480, 1994.12., p.35.

가해국 입장에서의 법적 전략 : 배상과 처벌에 관한 현재 상황

야수시 히가시자와(일본/ 변호사)

I. 배상

A. 일본 국내법원에서의 배상을 위한 법적 활동

1. 일본 국내법원에서의 소송과 판결 개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와 관련해 일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건이다. 이 중 4건은 한국인, 2건은 중국인, 1건은 필리핀인, 그리고 나머지 1건은 네델란드인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8년 전에 시작되었다. 3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부산사건, 필리핀인 사건, 네델란드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정부의 책임이 확인되고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단지 한 사건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2. 문제의 법적 근거

a) 불법행위 배상청구소송과 무(無)국가책임의 원칙

과거의 일본제국헌법 상,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 배상청구 소송은 무국가책임의 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 무국가 책임 원칙은 성문법으로 제정되진 않았으나 2차대전 종전 전까지 학자들과 법원들간에 있어 지배적인 원칙이었다. 그 당시의 실정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법원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사건에서 무국가책임을 근거로 희생자들의 배상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

b) 적정조치를 취할 입법부의 의무

부산사건을 담당했던 지방법원은, 입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는 일본헌법상 의무의 위반이며 국가배상법 하에서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본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의 의회의 위반사항은, 입법 작위나 부작위가 명백히 헌법의 용어와 상반되는 경우와 같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급 법원에서 동 지방법원의 판결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c) 준거법의 선택

중국과 필리핀의 원고들은 무국가 책임 원칙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불법행위법이 아닌 자국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인 사건의 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d)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일본에서는, 이미 구(舊) 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부터, 조약과 국제법은 직접적으로 일본법원에서 효력을 가진다. 필리핀인과 네델란드인 들처럼 과거의 일본영토가 아닌 곳에서 온 원고들은 소송의 근거로 1907년 헤이그협약 제3조를 제시했다. 동 협약은 1912년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였고 교전국들 간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온 원고들은 소송의 근거로 뉘른베르크 헌장에서 나온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헤이그협약이 한국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법원은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필리핀과 네델란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비록 동 협약이 계약국들에게 그들 국민들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위반국에 개인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살펴보면, 필리핀인 사건에서 법원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의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B. 일본에서의 배상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제안

1. 전후 배상법 제정

2. 성노예제 배상법 제정

3.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성폭력 희생자 문제를 조사할 패널의 설립을 위한 법

C. 인권이사회에서의 최근의 논의

1998년 10월에 열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일명 B규약, ICCPR)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성노예로 강제 동원됐던 소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느 정도로 배상을 하고 원상 회복시켰는가? 일본정부는 이러한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는가? 일본정부는 단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만 답했을 뿐이다.

II. 처벌

A.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강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기소되었을 뿐이다. '성노예센터'라는 체제나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강간은 IMTFE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IMTFE에 제기되지 않았다. 성노예제 범죄자에 대해 처벌한 유일한 재판소는 '바타비아 재판'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네델란드 군사재판소 뿐이었다.

B. 국내법률

일본의 형법은 감금, 강제요구, 폭력, 강간 그리고 살인 행위를 이미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범죄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세계대전 후 성노예제에 대한 어떠한 형사기소도 일본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차대전 동안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소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규정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일본은 성노예제를 특정하게 범죄화 하는 성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차대전 중의 성노예제를 처벌하지는 새로운 입법에 대한 주목할만한 제안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

헌법은 형법의 소급적 효력을 금지하고 있다.

C. 일본에 효력있는 조약상의 의무

일본은 전시민간인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체결했으며, 1953년부터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중대한 위반을 처벌할 새로운 입법을 의무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집단학살금지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이 집단학살이나 고문 행위를 범죄화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지우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이러한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

D. 국제형사법원 (ICC)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의 채택으로, 국제형사법원은 가까운 장래에 설립될 것이 기대된다.

동 규약은 '강간, 성노예제,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진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인식하면서 그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인도에 반하는 범죄, 2) 전쟁범죄의 계획이나 정책, 또는 대량적 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전쟁범죄, 성노예제가 국제범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발전이다. 비록 80개국 이상이 서명하였고 1개국이 비준하였지만, 일본은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국제형사법원 규약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저질러진 범죄는 동 법원에 회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성노예제가 국제범죄로 비난받고 국제사회가 성노예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장치를 획득하게 된 사실 때문에, ICC는 관련국(혹은 국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ICC 규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전시 성노예제에 대해 범죄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대한 법적 전략

일본의 법체제는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노예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에 대해서도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000년 법정은 이러한 일본의 법체제의 구멍을 메꿀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법정은 다음의 두 가지 모델 가운데서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뉘른베르크 재판소, 극동재판소, 구유고재판소, 르완다재판소 또는 ICC 등과 같은 국제형사재판소이다. 이 모델은 엄격한 형사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피고의 권리를 포함해 형사절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쟁에 반대해서 설립된 러셀법정과 같은 민간법정이다. 민간법정의 주된 목적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의 성격과 목적은 여성법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주제 2에 대한 토론

책임자 처벌이 앞으로의 과제

이미경(국회의원,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대표)

1. 왜 법적 해결이 중요한가?

(1) 법적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본질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비인도적 범죄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정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민간인을 앞장 세워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따위를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했던 것이다.)

(2) 일본군 '성노예' 범죄해결을 위해 투쟁하던 중 우리는 비인도적 범죄, 강행규범(비인도적 범죄는 어느 나라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거)을 비롯하여 일본정부가 가입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그리고 '취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 조약' 등에 대한 국제법적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게이 맥두걸 변호사가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들이 국제법에 비추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해 주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해결을 위해 10년간 운동하고 있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성노예 같은 범죄의 재발은 방지하는 것이며, 재발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도 일본군 '성노예' 범죄자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아야 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법적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가?

(1) 일본정부나 국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범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 일본정부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4년 반 동안 국민기금을 피해자들이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지만 대만정부와 한국정부가 국민기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지금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해결을 위한 운동단체들에게는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싸움에서 일차 승리한 것이다.

(2) '98년에 일본의 야마구치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가 배상을 위한 법 제정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법부작위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3인에게 1인당 3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배상을 법제정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보 전진임에 틀림없다.

(3) 일본의회 내에서, '전시성적 피해자문제 진상조사회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 등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만, 진상규명이 이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의회 안에서 법제화를 위한 일본 진전이 될 것이다.

(4)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는 책임자에게 일본정부가 주었던 명예에 대한 박탈까지 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된다. 여하튼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그 다음의 법적 책임을 묻는 요구들이 훨씬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5) 한국정부는 1993년 '일제하 군대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서 우선 피해자 신고를 정부가 직접 받고,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부 예산으로 매월 생활비와 의료비,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국민기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외교적 현안으로 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간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6) 한국 국회는 199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본전범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한국 국회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후 1년 가까이(98년 3월 14일부터 시행) 한

국 법무부는 일본 전범에 대한 명단작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7)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일본군'성노예' 범죄를 여론화하면서 조금씩 법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간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적 해결의 가능성 역시 민간운동이 계속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투쟁하느냐에 달려있다.

3. 법적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방향과 과제

(1) 지난 10년간 일본군'성노예' 범죄 해결을 위한 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조사하게 한 것이다.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변호사에 의해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게이 맥두걸 변호사에 의해 1998년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것이다. 특히 게이 맥두걸 변호사의 보고서는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려 왔던 것을 '성노예'이며 위안소를 '강간 캠프'라고 명백하게 개념 규정을 하였다. (나는 게이 맥두걸 변호사의 보고서 이후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성노예' 라는 용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며, 범법자는 처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박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98년 로마에서 통과된 국제형사법정이 각 국가의 비준을 얻어서 실시되게 된다면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법정은 법정이 개설된 이후의 범죄만을 다루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면 다음은 유엔 고등판무관이 조사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게이 맥두걸 변호사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등판무관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 보상체계 확립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3)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무력 갈등 하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이 과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처럼 강간과 강제매춘, 성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다. 게이 맥두걸 변호사의 보고서는 이 점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 운동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일했던 것은 바로 오늘 자행되고 있는 그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4)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계속 여론화시키고 국제적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새로이 제기되는 무력 갈등 하에서의 성폭력 해결 운동에 연대해야 한다. 자칫 우리 운동은 낡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과제가 아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때 50년 이상이나 침묵해야 했고 10년 이상 투쟁해도 범죄자가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해야 한다. 이러한 호소 속에서 우리 운동도 새로운 범죄해결 운동과 더불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이러한 범죄가 가지는 모든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력갈등 하에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강제 매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이제 첫 출발을 시작했을 뿐이다. 더 많은 연구 법적, 제도적 정비 여론의 환기, 교육, 그리고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본군 성노예 범죄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우리의 운동은 "보고"와 같은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무력갈등시 성노예, 강제 매춘, 조직적 강간 등 모든 사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당해야 했던 상황들, 운동 과정에서 가해국의 정부와 피해국의 정부가 보여주었던 태도, 또한 민간 운동들이 모든 것이 전형적인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 세계 인권침해의 역사에 뚜렷히 남겨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책무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보다 뚜렷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언인지 게이 맥두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다.

4. 2000년 법정과 그 이후의 과제

(1)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다. 자칫 이 문제는 낡은 운동과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자 처벌과 이를 위한 진상규명으로 우리의 요구를 좁혀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계속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배상문제는 자칫 위로금 따위의 돈의 문제로 왜곡될 소지가 크다.

(2) 고령인 피해자들이 한 명 씩 사망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위로금 따위로 타협적인 해결책으로 종결지어서는 안 된다. 한국 대만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2000년 법정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누가 책임자인지에 대한 진상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할 것이며, 전범 명단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전범명단을 확보한 후 각 나라들이 일본군 전범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혹시 이미 사망한 전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범 명단을 확보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는 전범들을 애국자인 양 은급을 주어왔고 그 후손들에게도 주고 있으며 신사에 모셔서 국민들이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명예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일본과 아시아 각국들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더욱 진척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서 저질렀던 침략과 인권침해 특히 성노예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일본의 시민사회도 성숙하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전후 세대들이 아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점에서 한국 시민들도 과거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독재 정권 하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자각 속에서 인권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라 믿는다.

주제 2에 대한 토론

필리핀에서의 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

준 로드리게즈(필리핀/ ASCENT)

지난 10월 9일, 도쿄 지방 법원이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6년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이 소송 절차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법적 견해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국제법에 준하여, 또한 일본법규에 준해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그런 소송이었다는 것을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서 세계의 모든 법적 시스템이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48명의 원고단은 도쿄에 항소심 시스템에 항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정부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일본 군부에 행해진 모든 위안부 관련 문제를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역사적으로 그 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왔던 많은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국제 사회는 최근 들어서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맥두걸 보고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를 통해서 국제 법규에 준해서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에 자행한 많은 만행들이 특히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했던 위안부 체제하에서 피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가 최근 들어 주장하고 있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체제를 아주 조직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은 도쿄 항소법

원에 최근 들어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관계를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법적 체제하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많은 수모와 박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이러한 내용을 일본 법정에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으려는 노력이 똑같이 전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 앞에서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나의 원고단을 구성함으로써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회 모든 정부들은 이러한 과거의 이루어졌던 전범이라 하더라도 물론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실현코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 합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피해자 분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물질적인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이분들이 겪었던 수모와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피해로 이분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모욕과 이런 피해들이 과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피해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일본 법정 뿐 아니라 어떤 법정에서도 이러한 범죄, 전시에 있었던 이러한 범죄가 꼭 보상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작은 회의실에서 정해진 제한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이것을 거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배금자(한국/ 변호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적용할 국제법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1989년 최초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던 때와 비교하면 10년 째 되는 지금 팔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998년 8월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에 제출된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료보다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국제법적 근거에 관하여, 명쾌하게 잘 정리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조장을 속 시원하게 잘 반박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두 분의 발표내용에서도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관련자 개인도 형사책임을 지는 국제법적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했더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의 자발적 해결이나 일본 법정에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일본법원의 태도를 볼 때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94년 8월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의 뜻을 표현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시종일관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면서, 일본의 국민기금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면서 민간차원의 '돕는'행위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조약이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모두 해결했다고 하는 주장이나, 2차대전 당시에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국제법규가 없었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법원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원고가 이긴 것은 1998년 4월 27일 아미구찌 지방재판소 시모노세끼 지부의 판결

하나 뿐이다. 이 판결도 게이 맥두걸을 비롯한 반보벤, 쿠마라스와미 등 유엔의 특별보고관들이 하나같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데 대한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로금을 인정했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인정한 금액이 불과 300,000 엔(2,280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야수시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회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은 일본군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무책임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관련 사건을 맡은 대부분의 일본법원들의 태도 또한 이러한 국가 무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판사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적용하는 법률이 일본국내법률이 아니라, 강행규범인 국제 관습법에 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일본 국내 법률의 적용만을 고집하고 있다. 관련 가해자들의 개인 형사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1994년 2월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처벌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야수시상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형법만 적용한다면, 형사 범죄인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강행규범인 국제 관습법은 공소시효가 전혀 없다는 특별보고관들의 주장은 일본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일본정부의 자발적 책임 이행만을 기다리거나 일본 국내의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일본법원에 이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역사의 산 증인인 이들이 한 사람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일본정부는 어쩌면 이와 함께 이 문제도 사그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두분 발제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현실성 있는 다른 대안을 많이 내놓은 것 같지 않다. 필자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어떨까? 문제 제기를 해 보고 싶다. 한국정부는 자국민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법적인 정식 배상을 받거나 가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한 어떠한 협조도,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권마저 대신 빼앗은 것을 했고, 김영삼 정권 때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 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배상을 묻지 않겠다'는 망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배상청구 노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것을 해 왔다. 지금 김대중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가 한 일이란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요구에 못이겨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기금 등을 지원한 것이나, 일본군'위안부'관련 범죄자의 입국금지를 위한 법규정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범죄자 입국금지 조치는 미국이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여론에 떠밀려 할 수 없이 한 듯하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입국금지의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김창록 교수의 지적에 동의한다.

한국정부가 자국민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자체에 대하여 부작위의 위법성'을 물어 한국정부에 바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가 한 조치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군사법정을 열어, 네덜란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5명에 관련된 일본군 범죄자를 재판하여 처벌하였다. 일본군'위안부'의 최대 피해국인 대한민국정부야말로 반드시 전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기하여 오고 있다. 한국 법원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방법은 노예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과 같은 강행 규범인 국제 관습법의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므로, 인권법정이 발달된 유럽의 어느 나라나 미국의 법정에 이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현재 스페인에 진행중인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 르완다나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곧 설립될 국제 상설재판소의 예가 아주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피노체트 사건은 중대한 인권 침해법에 대한 형사처벌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하고 또 공소시효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 등은 성노예, 강간, 강제 매춘과 같은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서 형사재판의 관할 대상으로 한다는데 대해 좋은 예가 된다.

미국의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미국의 불법행위법(tort law)에 의거하여 미국의 어느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더욱 연구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미국의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최근 일본군'위안부' 범죄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까지 취한 미국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일본 내 일본법정에서 싸울 때 보다 미국에서 싸울 때 훨씬 이 문제는 세계적 이슈로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히가자와 상의 발제에 관하여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Women's Court' 용어와 성격이다. 일본군'위안부'의 직접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을 포함한다면 여성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민족 문제, 아시아

피해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전체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구태여 '여성법정'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마치 여성의 문제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될 경우, 한국과 같이 유교문화의 잔재로 여성에 대한 비하,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일반국민들이 자칫하면 이 문제를 '인권문제' 보다는 덜 중요한 여성의 문제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또 이 "여성법정"이 전범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국제전범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 지도 알고 싶다.

주제 2에 대한 토론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을!

바히다 나이나르(미국/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가간의 정부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법적 문제 해결도 많은 난항에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사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시민단체에서 혹은 개인차원에서 추궁할 때 정부의 정치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해결 그 방안이 존재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이며,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형사법정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규범들이 각각 해당 국가의 헌법에도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국제법에서는 이러한 인권에 반하는 또는 인류에 반한 범죄가 궁극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국제법들을 각국의 해당 헌법, 국내법에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각국의 법적 시스템 안에서 처벌 가능한 것으로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이 그 범죄의 심각성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분쟁지역과 그리고 전쟁을 고려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재발될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기에, 과거의 전범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이것이 진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해당 정부, 특히 일본정부에게 모든 배상을 하라는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2에 대한 질의응답

사회자(박찬운) 수습 장의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내가 선택하겠다.

질문(마쓰이 야요리) 김창록 교수에게 질문하겠는데, 나는 천황의 형사처벌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답변(김창록) 우리는 일본 정부에 문제를 던지고 있다. 대 일본제국법에 근거해던 범죄였다. 형사적인 절차는 필요하다. 시민법정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징역 년, 사형들) 명백하게 언급해야 한다.

질문(이미경) 히가시자와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전범을 국가가 은급을 주고 있다면, 철폐 가능한 근거는 있는가?

질문(정숙자) 히가시자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2000년 법정 피고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답변(히가시자) 여성법정이라는 명칭은 여성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극동 군사재판에서 전혀 여성의 문제 해결이 없었다. 어떤 법정이든 법조문을 만들 것인가는 재판의 성격에 달려있다. 재판을 원한다면, 변호인을 만들 필요도 있다.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판단은, 시간, 준비, 피고인의 출석여부에 고려해서 해야 한다. 시모노세키 재판의 결과가 필리핀 재판에서도 함께 주장되어 항소심에서 더 좋은 판결 나오기를 원한다.

질문(권우중, 정숙자) 이미경 의원에게 질문이 있다. 민간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는 불만이 있다고 본다. 국회의 역할을 소개해달라.

답변(이미경) 국회의원 270명 중 90퍼센트가 참여한 가운데 서명하여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게 전달, 일본전범 입국 금지했다. 명단 만들기는 차후 인도에 반한 죄로서 제기 하여 통과 한국국회는 인도에 반한 죄로써 이 죄를 이미 말했으며, 법무부가 98년 3월부터 출입금지하고 있는데 아직 전범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책임 방기하는 것을 추궁할 일이 내 역할이다. 전범 리스트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형사법정에 싸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시효부적용 공소제약을 비준하고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노력하고 있다.

질문(강정숙) 준 로드리게스에게 질문하고 싶다. 필리핀 진상규명은 어떻게? 릴라와는 어떻게 교류?

답변(로드리게스) 진상활동, 시민단체주도 해결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여러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에 국내법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릴라 필리피나는 위안부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 존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같다.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란다. 법 판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훌륭한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있다.

질문(윤정옥) 배금자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은 무엇인가?

답변(배금자) 전범을 끝까지 쫓는 나치범 색출자 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유고, 르완다 유엔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방해한다는 것은 국가의 인권침해라고 본다. 최종적인 것은 물론 일본정부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재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주제3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

2000년 법정의 목적과 의미

야요리 마쯔이 (일본/ 바우넷 제팬 대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동안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의해 희생당한 '위안부'들의 정의와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중의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문제를 종식시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세계 여성운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1.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의해 희생당한 '위안부'들의 요구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인 '위안부'들이 세계 제2차대전 후 거의 반세기간의 침묵을 깨고 한국에서, 그리고 뒤이어 중국, 타이완,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네덜란드의 생존자들이 역사 앞으로 나선 것은 1990년 대 초였습니다.

가해 국가인 일본의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용기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고 전국을 통해 지원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은 희생자 여성들이 금세기에 여성들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 중 하나임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는 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등의 무장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 앞으로 피해당할 많은 여성들을 격려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지역과 무장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여성운동과 국제 인권운동의 주요한 협의 사항으로 표면에 부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선 '위안부'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음 요구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 (1) 진상규명
- (2) 사실인정
- (3) 공식적 사죄
- (4) 국가배상
- (5) 책임자처벌
- (6) 역사교과서 기록
- (7) 기념관 건립

2. 희생자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국제사회는 이들 요구에 대해 지지해왔으며 일본정부가 그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세계여성대회는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제 그리고 무력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그의 형태의 폭력을 전쟁범죄이며 인권에 반하는 범죄 행위이고 정부들은 조사와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희생당한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1996년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조사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는 일본정부가 '위안부'제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1998년 유엔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제 특별조사관인 게이 맥두걸씨는 "위안소" 설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법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표면화하고 국제적 관심이 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위안부'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일본정부는 거의 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모든 전쟁 보상문제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상과 일본과 피해국가들간의 쌍방향 합의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일본에서의 '위안부'제도 책임자 기소에 대한 지원 부족

일본에서의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의 주된 초점은 국가 보상이고, 일본 법정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들에 의한 7건의 민사소송을 지원 해왔습니다. 일본법정의 판결이 '위안부'들의 주장을 부인해왔기 때문에 배상 입법운동으로 이제 운동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고발은 이 운동에서는 다루지 않아 왔습니다. 1994년, 27명

의 한국인 '위안부'들은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의했으나 그들의 서면고발은 도쿄 검찰국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에 대한 한국인들의 활동은 운동권 주류에 의해서 또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가들은 '위안부'문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분열과 불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비록 일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이 한국측의 기소고발 운동에 대해 찬성하여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 운동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전범처벌이나 기소라는 생각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변호사협회는 세계 제2차대전 종식이래 그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변호사협회가 강하게 국제전범법정의 설치를 주장해온 것에 대조적으로 일본변호사협회는 결코 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도와 관련되었든, 아니든 어떤 전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일본사회에서는 터부입니다.

4. 일본정부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의무의 불이행

일본이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하였을 때 개인적인 전쟁범죄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 이끄는 연합군은 극동지역 국제 군사 전범재판소(도쿄전범재판소)를 설치하였고 28명의 일본 전범들이 고발되었으며 그중 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쿄 전범재판 이후 어떤 일본인 전범도 일본법정에 의해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도쿄 전범재판이 단지 승자들에 의한 보복이라는 우익의 운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쿄 전범재판을 비난하고 도조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인 "자존심"이라는 영화는 작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일본군의 반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도쿄전범재판과 전쟁 직후 성노예제도를 35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한 것에 대해 9명의 일본군 군인들을 고발한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의 네덜란드 군사 전범재판소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있었던 군사 전범재판소에서 성노예제도를 전쟁범죄나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로 고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결코 "위안부"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성노예제도를 전쟁범죄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1991년 일본군의 '위안부'제도에 관련된 사실이 입증되어 1993년에 그 윤리적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때까지 그 관련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국가의 '위안부'들의 증언이 일본군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여성에게 저질러진 그 짐승같은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이 살인, 유괴, 감금, 강간, 성 가혹행위, 압제, 그리고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가해자들은 어떤 형법이나 국제법에 따라서는 처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런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처벌해야 하는 그의 의무에 부응하는 어떤 수단도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서구 국가에서는 전범 처벌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전후 기간동안 일본인들이 스스로는 결코 전범을 고발한 적이 없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독일은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나치 전범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 서독과 동독은 10만명 이상의 전범을 수사해왔고 6천 사건 이상이 유죄로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2월 (1998년), 전 비시정부의 관리였고 종전 후 장관까지 지냈던 87세의 모리스 파퐁을 프랑스의 유대인들을 나치 집단수용소로 강제 이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법정이 종전 후 반세기 이상 지난 오늘날에 자국민을 전범으로 처벌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이태리에서 한 전 나치 정보부장이 시민 학살에 관여함으로써 해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99년 4월에는 1999년 1월 도쿄에서 있었던 게이 맥두걸씨의 연설에 따라 나치 점령지였던 벨라루스에서 저질러졌던 전쟁범죄에 대해 한 전 독일 비밀경찰 요원이 영국법원에 의해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많은 서구국가에서 전범에 대한 고발이 좀더 빈번해진 것은 1980년대 후기 이후부터입니다.

6. 가해자 처벌 투쟁의 국제적 동향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한국 '위안부'들의 요구 중 하나는 그 범죄행위의 책임자 고발입니다. 북한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희생국가들의 단체들도 일본정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해야하는 그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가해자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자신의 의무에 여전히 부응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인권에 대한 추잡한 위반행위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권 특별조사

관인 테오 반 보벤씨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은 그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게 노예제도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직접 배상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정부는 전쟁 중에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후 그 범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처벌에 대한 질문은 특별조사관인 루이스 조이네트씨에 의해 제출된 불처벌 투쟁 원칙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국제법 하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의 희생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 정의가 행해질 권리 (국가는 가해자들을 고발하고 재판하여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그리고 배상의 권리 등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범죄행위에는 물론 성노예제도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1996년의 인권 소위원회의 결의문은 불처벌 특별조사관에게 전쟁중의 여성에 대한 착취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7. 전쟁중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 극복에 있어서의 역사적 진보

티나 돌고폴씨, 켈리 도온 애스킨씨 그리고 아이코 우즈미씨등을 포함한 역사와 국제법의 여성학자들이 일본 항복이후 도쿄 전범재판과 다른 군사재판소가 일본군에 의해 그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포함한 성폭력을 거의 고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몇가지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법정은 아시아 민족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전 식민주의 열강들의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재판관들과 검사들은 남자였고 그들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로 국제법은 전시의 강간을 여성희생자들 자신의 인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여기지 않고 단지 희생자의 가족이나 사회의 명예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 일본군 '위안부'들이 앞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그리고 다른 무력분쟁 지역에서 집단강간과 그와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세계 여성 운동은 범세계적인 여성 인권운동,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것

은 비록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국제 전범법정에서 처음으로 성폭력이 고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간, 성 노예제, 그리고 강요된 매춘을 전쟁범죄이며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로 명백히 규정하는 법이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한달 후,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제출된 게이 맥두걸 보고서는 불처벌의 악순환을 종식시켜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노예제도의 가해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8. 여성에 의한 2000년법정 개최의 필요성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가해자들을 고발, 처벌해야 하는 그 의무에 답하는 것을 거부해왔고 국제 사회가 일본의 성 노예제도를 고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 사법재판소가 비록 60개 이상의 국가가 그 법률을 비준한 후에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차례로 사망하고 있는 일본군 성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에게 정의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하고 무엇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심각하고 시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한가지는 2000년 법정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이고,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하려는 여성들의 시도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의 성 노예제도가 여성과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과 그들에 대한 처벌의 적합한 방식을 정의하고 그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포함한 전 과정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것의 범죄성을 명백히 해두는 것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맹렬하게 일본 젊은 세대에게 그것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돈을 위한 매춘이었다고 설득하려는 운동 때문입니다.

그 법정은 그 범죄의 관련자들을 명령 책임이 있었던 위치의 가해자에 비중을 두고 그 범죄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에서 그의 명령하에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강간을 포함한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형법에 의해 책임이 있었던 야마시타 장군이 2차대전 후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 군사 위원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역사적 사건을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법정은 또한 일본정부가 전후 기간을 통하여 그 국제적 책임을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9. 2000년 법정의 목적과 효과

2000년 법정의 여러 목적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목적은 첫째, 희생자들의 정의와 존엄성을 복원하는 것이고 둘째,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고 성적인 전지에서 진보된 국제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장차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2000년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자신이 저질렀던 침략 전쟁 그 자체와 군 성 노예제를 포함한 과거에 아시아 사람들에게 대해 행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에 부응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이고, 둘째 화해라는 기반에서 아시아에서 함께 나누는 미래에 대한 기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법정에 대한 준비과정이 이미 일반 대중들과 특히 평범한 여성들에게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범죄, 국제법, 사실의 문서화, 역사적 견해 등등에 대해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언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티나 돌고플씨가 1998년 12월 도쿄에서 2000년법정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라는 기초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여성들은 자신들이 공의를 위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 2000년 법정의 준비와 향후 과제

바우넷 제팬(VAWW-NET Japan)에 의해 제안된 2000년 법정은 1998년 4월 서울에서 있었던 아시아 여성 연대회의에서 받아들여졌고, 관련 국가들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제적인 준비회의와 연구조사회의는 1998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두 번째 국제회의는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0년 법정을 위한 국제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국제 실행위원회는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윤정옥씨가 대표하는 피해국(남,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단체들
- 2) 야요리 마쯔이 씨가 대표하는 가해국의 조직, 바우넷 제팬
- 3) 인다이 사요르씨가 대표하는 국제 자문위원회입니다.

2000년 법정 위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안 부르넷(캐나다), 샬롯 번치(미국), 플로렌스 부테구와(우간다), 우스티나 돌고플(호주), 알다 파치오(코스타리카), 유지니아 피짜 로페즈(아르헨티나/영국), 마리엠

헬리 루카스(알제리아/프랑스), 레파 블라드예노비치(세르비아), 바히다 나이냐르(인도/미국), 헬케 잔데르(독일)

2000년 법정은 네덜란드의 테오 반 보벤씨, 그리고 미국의 론다 코플론 등 두명의 법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최초의 국제 활동위원회 모임은 론다 코플론 및 7개 회원국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13일, 이틀동안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법정의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헌장의 작성, 2) 판사, 검사, 전문가 증인, 그리고 그외 법정 위원들의 선정, 3) 회원국가와 국제 활동위원회의 연구, 조사에 대한 협력, 4) 모금 전략, 5) 그리고 국내외의 홍보입니다.

어떻게 일반 대중 여성들과 법률 및 역사 전문가들이 함께 2000년 법정 준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2000년 법정을 새 밀레니엄의 역사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주제3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제안

조시현 (한국/ 성신여대 법대 교수)

우리 것과 같은 법정은 최후의 굶주린 사람이 먹여지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끝장낼 생활방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필요할 것이다 - 버트란드 러셀

일본제국정부와 군대가 아시아의 민중들, 특히 이른바 '위안소'에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된 여성들에게 저지른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조금치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이번 천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슬프고 또한 절망적이다. 일본정부는 예컨대 유엔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여사의 최근 보고서에서 권고된 것과 같이 자신이 지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¹⁾ 또한 세계여성들이 전쟁중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비슷한 폭력의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의 유산이 아무런 정의도 없이 가해자의 사회와 피해자들의 사회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해치면서 다음 천년으로 넘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절박한 심정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관련된 나라들의 시민사회들은 피해자와 연대하여 국제법정을 세우는 중이다.²⁾ 이전과 이번 회의 중에 법정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포괄

1) Gay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우리말 옮김에는 '맥두갈 보고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0월호(통권 제24호), 63쪽; '맥두갈 보고서(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같은 잡지, 98년 11·12월호(통권 제25호), 83쪽 참조.

적인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주요 이유는 글쓴이가 이해하기로는 관련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국가가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 내에서의 법정절차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2000년 법정은 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 이 글에서는 2000년 법정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조금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한 논평과 제안을 하려고 한다.

1. 법정의 성격

2000년 법정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지도원칙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법정의 성격에 관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 법정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는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를 당한 여성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 대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두 개의 관련되지만 독자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2000년 법정의 성격자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 의해 세워진 법정이라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은 거기에서 다루어질 문제(관련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격), 그 구성과 적용법규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책임이라는 첫 번째 문제를 비슷하게 다룬 이러한 법정으로 잘 알려진 예로는 버트란드 러셀 등의 주도로 설립된 것이 있다. 1967년 스톡홀름과 로스킬드(Roskilde)

2) 1998년 국제심포지움 "How to Hold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Year 2000?" (Tokyo, 12 December 1998)에 발표된 여러 논문 참조.

3) 2000년 법정의 개최지에 관하여 많은 요인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잔혹행위에 대한 연합국의 재판은 범행자들은 범행장소로 돌려보내 그들이 유린한 사람들에 의해 현지에서 재판되어야 한다는 다른 철학적 바탕 위에 서있다. 일본의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재판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이며 법정에 증언을 하기 위한 장거리 여행에 부적합할 지 모를 건강상태에 비추어 인도적인 측면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 2000년 법정이 열린다면 그것은 일본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바꾸고 일본사회를 인권의 보호와 촉진에 좀더 민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에서 두 차례의 회기로 열린 러셀법정은 베트남 전쟁 동안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과 여타 국가의 책임문제를 다루었다.⁴⁾ 일본정부가 이미 위안소 설치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고⁵⁾ 전쟁 중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주장이 전개됨에 비추어⁶⁾ 첫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법정의 유형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다른 법정과 비교하여 2000년 법정의 임무를 독특하고 훨씬 힘겨운 것으로 만든다. 1993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범죄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맥두걸 보고서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법정의 비정부적 성격은 이 법정이 배상판결과 형벌이라는 의미에서는 정의를 행할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점은 또한 국내 또는 국제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형사법정에서 적용되는 현행법과 절차를 단순히 따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부적 성격의 형사법정이 우리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법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판결을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만큼 무의미한 것이라고까지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전범법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법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애초에 가지는 호기심을 국제공동체의 기본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저질러진 여성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바꿔놓아야만 한다. 이들이 비록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자신의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빛을 보여 주어야 한다. 2000년 법정은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에 있어서 결정적 순

4) *Prevent the Crime of Silence: Reports from the sessions of the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unded by Bertrand Russell, London, Stockholm, Roskilde* (selected and edited by Peter Limqueco and Peter Weiss with additional material selected and edited by Ken Coates and a Foreword by Noam Chomsky, 1971); 또한 <http://www.homeusers.prestel.co.uk/littleton>와 <http://www2.prestel.co.uk/littleton> 참조.

5) UN Doc. E/CN.4/1996/137, annex I.

6) 예컨대 Radhika Coomaraswam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UN Doc. E/CN.4/1996/53/Add.1(4 January 1996); Ustinia Dolgopol and Snehal Paranjape,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3) 참조.

간이 될 것이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내청중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의 가슴과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한다.

2000년 법정은 관련 범죄자행자들에게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의해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법정의 권한은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인간성에서 나온다.⁷⁾ 이 법정의 설립제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지는 것이 아니라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법정은 그 동안의 초점을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강간수용소에서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체계적 성폭력으로 옮기면서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성격이 명백히 범죄적이라는 것을 청중들이 깨닫게 할 것이고 또한 더 나은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법정은 또한 이들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과거와 맞닥뜨리도록 도와주면서 정의와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용기있고 진솔한 노력의 모범을 세움으로써 이 법정은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2000년 법정이 형사책임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법정이 일상적인 말뜻에 따라 누구를 처벌하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 법정은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에 세워진 국제법정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재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법정은 오히려 양심의 법정이며 진실을 발견하고 범행자의 확인과 처벌하려는 긴 과정에 있어서 단지 첫 발자국에 불과하다. 2000년 법정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하여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이다.

더욱이 많은 국제법규는 국가들의 국제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정부법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작용할 것이다. 국제법의 적용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국제법이 국가사이에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의 양심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말대로 '인간성의 기초적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⁸⁾ 새로운 캠페인방식으로 민간법정의 적절한 기능수행과 생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따라서 형성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넘치는 사고가 필요하다. 2000년 법정의 실제운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여러 문제들을 해

7) Jean-Paul Sartre, Inaugural Statement, 앞의 주 5 참조.

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p. 114.

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의 성공여부는 대체로 위에 설정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의 활동방식을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점들을 유의하면서 다음에서 관할권, 적용법규, 2000년 법정의 구성과 절차적 측면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한다.

2. 관할권

2000년 법정에 제출될 주요문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일본국가는 군위안부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가? (2) 군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범죄행위의 수행에 관여한 개인들은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가?⁹⁾ (3) 다른 국가들은 예를 들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이 이들의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할 의무를 지는가? 법정의 목적상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명백해질 것과 같이 별도로 아닌 하나의 절차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본안(□□)의 서술은 물론 더욱 다듬어질 수 있다. 관할권의 시간적 범위와 같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으나 이들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법정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법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법정이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위한 토론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국제법의 근본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자행된 극도로 야만적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작용한 - 민족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차별, 계급구조 따위와 같은 -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은 법정의 관할권내에 있게 될 것이다. 2000년 법정은 통상적인 법원의 심리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이러한 요인들의 확인과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같은 자료를 받아들일 것이다.

2000년 법정의 전체 목적이 단순히 현행 국제법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¹⁰⁾ 이 문제가 가지는 사회, 문화, 법, 제도, 심리, 역사적 측면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여성의 관점이 또한 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들의 특성이 관련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완전히 고

9) 유고전범재판소는 "현행 국제법상 국가는 정의상 국내형사체계에 규정된 것과 같은 형사제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Prosecutor v. Blaskic* (Objection to the Issue of Subpoena Duces Tecum), IT-95-14-AR 108bis, Decision of 29 Oct. 1997, para. 25; 110 *International Law Reports* 698.

10) 특히 Ustina Dolgopol, *A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1998년 국제심포지움, 앞의 주 3에 제출된 논문).

려되어야 한다.¹¹⁾ 이러한 의미에서 진상조사와 연구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법적 분석은 앞으로의 피해자옹호활동에 유용할 것이다.

덧붙여 주목할 점은 2000년 법정은 역사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관련 범죄가 1930-40년대에 저질러졌을지라도 날로 숫자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으며 계속 구제받지 못한 생존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점은 넓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히 무력충돌 중에 세계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영역을 포괄하도록 사실발견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다: 성노예를 위한 여성들(나이, 숫자, 출신, 사회적 지위 등)의 강제연행, 위안소의 설치, 관리, 운영과 위안소에서의 군위안부의 취급과 조건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군부 그리고 관련 개인(예를 들어 경찰, 군인, 군속, 식민관헌, 점령지 군사정부와 토착부역자)의 역할과 관여의 정도, 각각의 여성피해자들이 겪거나 겪고있는 고통의 공통점들과 그 독특한 특징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그리고 그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전후 생존조건과 건강상태, 사회의 응대, 재활과 재통합과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의 특성과 개인책임자

누구를 2000년 법정에 세울 것인지 선정하는 것은 전체 재판절차의 성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법정은 잔혹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다.¹²⁾ 이 문제는 진상조사팀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구 일본황제, 히로히토는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지만 문제되는 시기 동안 여성에 대한 그의 범죄책임은 일본국가와 법정에 기소될 사람들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면서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재판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언급된 사람의 명단은 법정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둘째, 범죄 자행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범죄피의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흩어짐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

11) Kelly D. Askin, *Sexual Violence in Decisions and Indictments of the Yugoslav and Rwandan Tribunals: Current Statu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1999), p. 97 참조.

12) 임무의 차원을 예시하기 위해 동경재판이 증거로 제출된 4436건의 문서와 49명의 증언을 검토하는데 2년이 넘게 소요됐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Utsumi Aiko, *Tokyo Tribunal and Sexual Violence* (1998년 국제심포지움, 앞의 주 3, 제출 논문).

당시 국가기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생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듯하다. 이러한 고위 관원들은 명령책임의 법리에 의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상대적으로 충족시키기 쉽다. 이를 위해 명령의 구조와 결정과정이 강조될 것이다.

셋째, 국제범죄의 각 유형의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와 군부의 관여의 정도는 일본정부에게 국가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한편 예컨대 자발적이던 강제이던 모집의 방식은 위안소에서 저질러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형사책임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범죄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은 이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와 집단학살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다.¹³⁾ 2000년 법정은 문제가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특히 군부가 위안소의 안팎에서 자행된 집단강간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전후(戰後)책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자세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기에는커녕 진실의 부정, 은닉, 은폐, 왜곡을 일삼아 왔고 전쟁 동안과 그후에도 문서와 자료를 파괴하고 숨기는 것은 물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있다. 광범위한 학살이 있었으며 외국 또한 종종 적지에 아무런 생존수단도 남기지 않은 채 군위안부를 유기했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측면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백하게 일본정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손해배상과 사죄를 포함한 배상을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¹⁴⁾ 의심할 것도 없이 진실의 은폐는 모든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2000년 법정은 또한 앞의 문제 (3)을 다룰 수 있다. 연합국들은 전쟁직후 군성노예에 관한 광범위한 문서와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스스로 이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용인하여 그러한 잔혹행위의 자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았다면 연합국들은 최소한 "(왜 이들이 범죄자들을 재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¹⁵⁾ 더욱이 연합국들과 (피해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예를

들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할 추가적인 의무를 지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3. 법정의 구성

2000년 법정의 구성과 참가자들의 적절한 역할 배분이라는 문제는 법정의 목표, 성격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길보기에 기술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판사의 수는 법정이 다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판사의 자격은 법정의 목적이 단지 배상과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비추어 법률가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법률가의 참가는 법정의 적절한 절차진행을 위해 요구된다.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국제사회의 양심을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충분할 것이다. 판사들이 가해국과 피해국이 아닌 국가출신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¹⁶⁾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덧붙여 판사들의 기능의 하나는 바로 판결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짧을 것임에 비추어 판결이 자세하거나 길 필요는 없다. 세계시민 사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사실의 확인과 법규적용이 담긴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판결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반드시 법적인 판결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범죄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검사를 들 것인지 이다. 재판 전에 범죄수사를 수행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할 국제검찰단을 두어 비정부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재판을 위해 중요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체제는 본래 형사정의의 배분을 독점하고자하는 현대 국가구조에서 오는 국가 권력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판절차는 '시민소송'(civil action), 즉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를 들 경우 피해자들이 전체 과정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증인의 지위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법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검찰을 두기로 결정한다면 피해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15) Dolgopol and Paranjape, 앞의 주 7, 203쪽.

16) VAWW-NET Japan Research and Investigation Team, Aim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Committee Proposal from Japan (paper presented to the 1998 International Symposium: How to Hold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Year 2000?, Tokyo, Japan, 12 December 1998).

13) 관련되는 국제범죄의 유형은 특히 맥두걸보고서, 앞의 주 2, 참조.

14) *Velasquez Rodriguez Case*, Judgment of July 29, 1988,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 C, No. 4 (1988), 95 *ILR* 259.

들이 가령 적어도 각 국가에 한 명의 검사를 두는 방식으로 더욱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 한다. 2000년 법정의 진정한 정당성은 오늘날까지 고통을 안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른 점에 있어서도 판사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음 항에서 논의될 것이다.

배심원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배심원들은 법정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표가 되는 청중을 상징한다는 착상이다. 심리과정은 공개될 수 있고 각각의 배심원이 각자의 평결을 쓰도록 권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판될 수 있다. 2000년 법정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결의(안)을 기초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피고측 변호인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원칙적으로 재판절차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이 법정에 특별한 장치를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가자들의 불편부당함을 증명하고 공정한 재판인 것처럼 보일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2000년 법정은 결국 캠페인하는 한 방법일 따름인 것이다. 일본정부와 피고인들이 변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은 국내 또는 국제법원에서 정의를 위한 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2000년 법정은 공판의 운영과 기록을 담당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법정 준비단계에서 사무국은 정보공유와 섭외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국제법정과는 다르다. 1999년 2월 출범한 여성법정국제조직위원회(Women's Tribunal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4. 법정의 절차

이러한 재판절차와 다른 측면을 규율하기 위해 헌장(charter)을 채택하자는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이는 명백하게 뉘른베르크와 동경재판을 유추한 것이고 또한 보다 최근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관한 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법원의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법정에서 타당한 고려사항이 비정부법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법정이 이러한 규정에서 예시되는 것과 같은 상세한 절차를 필요로 함에 반하여 탄력성은 미리 정

한 엄격한 틀을 가지지 않는 비정부법정의 요체일 것이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은 2000년 법정의 목적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좌절시킬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은 불필요한 복잡함과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 법정 조직위원들과 판사들의 의견일치로 해결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책임을 심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제소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정은 이를 개정전 적절한 시기에 일본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 제소에 대한 피고정부의 답변은 현시점에서 기대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국제인권협약상의 여러 인권기구의 권한을 수락하지 않은 사실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검사 또는 설치된다면 검찰부(the Prosecution Office)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소장은 앞으로 열릴 법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기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규가 자세히 기록된다. 조사팀과 법률팀은 이를 위해 충분히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들이 법정이 개정되기 상당기간 전에 이러한 기소장에 담을 범죄혐의사실을 구체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도 역시 다른 맥락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규칙은 이 법정에서 유지되기 어렵다.¹⁷⁾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수단과 관련하여 2000년 법정은 법정에 나오도록 요청서, 소환요구서 또는 소환영장(subpoena)를 발부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다. 증거자료의 대부분이 국가의 손아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정은 당국자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subpoena duces tecum). 법정의 준비단계에서 이들이 전시문서와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정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¹⁸⁾ 2000년 법정은 협력이라는 바탕에서 운영될 따름이다.

형사절차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2000년 법정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이다. 여러 국제형사재판소의 확립된 관행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비추어¹⁹⁾ 이와 다르게 진행하는 것은 2000년 법정이 국제법을 위반하

17) *Prosecutor v. Rajic* (Review of Indictment), Case IT-95-12-I, Decision of 29 August 1995; 108 *ILR* 10 참조.

18) *Prosecutor v. Blaskic* (Objection to the Issue of Subpoena Duces Tecum), IT-95-14-PT, Decision of 18 July 1997; IT-95-14-AR 108bis, Decision of 12 August; 110 *ILR* 608 참조.

19) 예컨대 국제형사법원 규정, 제63조. UN Doc. A/CONF.183/9 (17 July 1998).

였다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 법정의 초점은 역시 군위안부들을 성노예로 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과 역할을 밝혀내는 노력을 촉발시키는 데에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 출두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차진행은 말할 것도 없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²⁰⁾

2000년 법정의 진행은 (검사에 의한) 기소장의 낭독, 증인진술의 청취, 증거와 조사결과와 제출의 순서로 할 수 있다. 각 참가자의 역할 배분은 핵심적이다. 각 참가국에서 온 한들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시간제한 안에 증언을 할 수 있다. 퇴역군인들의 증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서면자료는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한 흑시 모를 위해행위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판결의 부여와 형벌의 부과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유용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재판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2000년 법정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유죄인지를 판단하면 충분한 것 같다. 비정부법정에서의 재판은 권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전반적인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법정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항소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법정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은 법정의 목적상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정부와 피고인들이 판결에 항소하거나 비판할 필요를 느낀다면 이들은 절차의 흠결이나 법정이 실제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음을 헐뜯기보다는 법정에 출두하여 그들이 아는 바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러기 위한 적절한 길은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2000년 법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들은 명백하게 그 성격상 다른 법원에서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세워놓은 규칙에 따라 지엽적인 절차적 치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상식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맺는 말

2000년 법정의 주요목표의 하나는 군위안부에게 저질러진 잔혹행위가 국제법상 범

20) 국제형사법원 규정, 제65조 참조.

죄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범행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일본과 다른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도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는 행동을 취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000년 법정의 설립과 진행은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짜여져야 한다. 피해자의 법정이라는 이 법정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2000년 법정은 각국정부들이 듣기를 꺼려하는 여성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광장이 될 것이다. 이 법정의 개최는 진정한 법원이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신비로운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맥두걸여사가 최종보고서에서 요청한대로 유엔은 무엇보다 "(a)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강간수용소를 설립, 지원 또는 이용한 군인과 군속 개개인에 대한 증거 수집, (b) 피해자 면담; (c) 일본검찰에게 재판준비자료의 전달, (d) 당해 국가 안에 있는 범 죄자를 찾아내고 체포, 소추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생존자단체들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¹⁾ 이러한 일에 있어서 유엔과 특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준비와 개정에 모든 지지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유엔의 관여는 특히 환영할 만한 것이며 법정의 성공적 개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2000년 법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법정에서 개인형사책임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도전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1) 앞의 주 3, Annex, para. 63.

최대한 국제언론을 통한 홍보를

게이 맥두걸(미국/ 변호사)

몇가지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000년 법정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와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인 산 역사를 듣게 될 것이며 일본에 있는 많은 문서들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군의 위안소와 관련된 반인륜적인 범죄의 일련들이 반인도적이었다는 것, 폭력과 범법행위가 있어 왔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한 절차로서의 법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법정은 행사가 아니라 진실의 폭로와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의 노력으로서 한 절차로 이해한다. 여기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 (Impact)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관련될 것이며, 이미 있는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 국제법적인 체계이거나 국내법적인 체계가 되었든간에 - 우리의 원리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정은 국제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법정은 범죄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유의 시작을 뜻한다. 이 법정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 어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야 하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사법적인 법정을 구성하는 목적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과, 이를 얼마나 그럴 듯 하게 공식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 또한 이 속에서 진실과 증언을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국제언론의 지지를 받는 노력도 해야한다. 언론을 통해 모두에게 피해자들의 진실을 세계 속에 알려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국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인다이 사호르(필리핀/ ASCENT)

우리는 지난 9-1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통해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잔혹한 고통이었는지 들어 왔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고통은 전쟁후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이 문제는 전시 무력갈등과 폭력 속에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자행된 범죄에 대한 조치는 국제 인도법적으로 피해자 여성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폭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를 통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리고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피해국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인해오던 일본이 시모노세키의 소송을 통해 미흡하게나마 인정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제2, 제3의 시모노세키의 소송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제 3에 대한 토론

전범을 처벌하는 첫걸음부터

리아 잉치(대만/ 변호사)

2000년 법정 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조명해 보면 첫 번째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주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물적 배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에 입은 많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과 관련된 공식 사죄가 필요하다. 공식사죄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포럼을 마련하여 법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며 형사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국내법정에서의 기소가 필요하다. 한국과 대만법정에서의 기소로 광범위한 조사와 여러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다. 이분들에게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동안 긴 세월간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런 법정을 통해서 공식적인 그리고 법에서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2000년 법정은 전범들을 규탄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2000년 법정을 위해 초기 조사단계는 전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고, 어디에 계신지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런 1차적인 조사결과에 기반을 두어 대만과 한국 등 관련단체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폭로하고 '위안부'제도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대만의 피해자들은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다. 이분들이 수치심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입은 피해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고통과 더불어 끊어놓는 결과를 낳았다. 50년 동안 부모님의 산소도 찾아뵙지 못한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고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오명을 씻겨드릴 의무가 있다. 우리는 2000년 법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범죄를 규정

하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온당한 정의가 내려질 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권리와 보상이 온당히 내려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남은 여생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주제 3에 대한 토론

새로운 방법으로 2000년 법정을 구성하자

홍성필(한국/ 이화여대)

정신대문제는 미래의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미래도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서 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망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말할 때 두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번째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의 국제인권법의 발전도 피해자의 구제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가 2000년 법정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당했던 일에 대해 정의를 보상받아야 하며, 당연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세가지 형태의 구제를 2000년 법정은 담당해야 한다. 둘째 법률적인 의미이다.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 독일은 나치가 처벌을 받았는데, 일본은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 내에 인간 존중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지역평화와 연결되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2차세계 대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의 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선량한 국민들과 나치들이 분리되었다. 지금도 독일인들은 나치의 후손이라는 것을 꺼린다. 그런 반면 일본은 분리가 안되었다. 현재 일본인들은 잘못을 저질렀던 범죄자들과 자신들을 분리하지 못한다. 초급 상태의 경미한 불안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2000년 법정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면, 우선 법정외의 모양과 구조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형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불법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고, 또 하나는 처벌을 하거나 배상을 하라는 구조이다. 이 두가지 모양을 놓고 본다면, 나는 당사자 구조는 반대한다. 검찰과 변호인이 나오는 것은 동경재판에 했던 것과 같은 우려가 있다. 나는 당사자 대립구조도 보다는 Human rights Community의 모델이 낫다고 본다. 피해자들이 마치 법원에서 자기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정은 범죄를 결정하고 배상이나 형벌을 명령한다. 좀 더 법정 같은 법정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별검사단, 특별변호인단 또는 특별청원단 등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일상적인 형태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우리의 일은 창의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범죄를 다룰 것인가 하는 실제법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국제형사법과 처벌에 관한 문제와 국제인권법의 문제가 사실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이루어져 있다. 전범처벌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했으며, 인권법의 발전을 통해 인권이 사회나 유럽 커미션이나 그 이후 자기들 나름대로의 배상 및 보상, 범죄자 관행에 대한 것을 쌓아왔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두가지, 즉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해온 법이론과 국제인도법 내지 국제형법과 국제인권법을 합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주제3에 대한 질문응답

질문(이현숙) 마쯔이 야요리에게 묻고 싶은데, 혹시 일본이 전쟁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마쯔이) 유럽에 고위관리까지 지냈던 사람도 전범 재판을 받은 적 있다.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독일은 나치즘, 소송을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었다.

답변(조시현) 나치옹호하는 발언 금지하는 입법이 있다. 아파라헤이트 발언금지, 전쟁 미화하고 선동하고 이에 대해 입법화하고 있다.

답변(마쯔이) 일본 비준, 인준을 거부하다가 그 중 한 조항,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미국이 전범 책임이 있다. 생화학 무기를 미국이 개발하는데 많은 피해가 있었다. 또 하나, 핵무기가 있다. 미국이 일본상공에서 민족학살, 원자폭탄 투하도 미국이 책임 있다. 미국에서 출판된 책, 일본국왕이 왜 전범으로 포함되지 않았는가? 국왕이 동경재판에 나서지 않도록 당시 꾸며서 거짓증언 했다. 당시 미국인 한 사람이 외교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거짓증언을 했음이 나온다.

질문(윤정옥) 맥두갈에게 묻고 싶다. 구라파, 어떤 단체가 가입이 가능할까?

답변(맥두갈) 질문답변 전에 조금의 정보가 필요하다. 참여할 정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국제규모로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제 3국이라는 표현은 다른 각도로 썼다. 정부차원의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법정이라는 것은, 다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국제사법 재판소의 도움으로 유엔과 관련한 참여도 추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아프라 타이트 흑백인 문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은 좀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종학살은 르완다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범죄로서 미국도 참여, 당사국 자국의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참여한다면 도의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다. 개인의 책임, 법적 책임의 의무, 범법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진상조사에 근거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정부에게 만든 전범자 리스트를 국회에서 입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답변(조시현) 르완다 전범재판 판결, 아카에수에서 성폭력, 특히 성노예, 피고인에 의해 자행, 집단 학살, 판례, 성노예제가 집단 학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본다. 여성

및 국제법에 의한 역할, 아파시타 장군 미군정에 의해서 총살형, 필리핀에서 자행했던 만행, 이는 바 없었다고 말했으나, 지위, 부하 군인들을 지위 하는 통치권자로서 구구절절 한 내용이 있다.

답변(홍성필) 항소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2000년 법정에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실제법정을 염두에 둔다면 그에 맞춰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을 생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답변(인다이) 도쿄현장과 달리 여성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성폭력에 기초한 범죄사실의 소추를 명실화 해야 한다는 것, 현장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상하는 것, 그것을 명시해야하는 것, 을 기초하는 것,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성폭력이 자행되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보충발언(마에다) 형사책임 추구를 하도록 전쟁입법을 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전쟁방지법을 요구할 수 있다. 초안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개인의 형사책임을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번 법정에서 정부에 물어질 수 있다.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답변(마쯔이) 나도 찬성한다. 전쟁 방지법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일본 전쟁의 책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보수적인 현실에서 이 문제 법은 통과될 리가 없지만,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일본, 6월 23일? 제네바에서 워킹 그룹이 열린다. 8월 유엔에서도 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 논의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열렬히 반응할 필요가 있다.

조시현 : 일본정부가 전쟁 후 평화조약을 하게되는데 판결과 현장을 승인하고 조약에 근거하면, 그 현장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처벌의 근거는 일본국내법에 이미 있다. 이런 노력은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머니(이용수) 아주 시급한 게 있다. 일본 천황 2002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일본 갔을 때, 아시아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막아야한다. 맥두갈 선생님께 편지 전해주고 싶다. 내가 편지를 썼다.(할머니 편지 전달)

사회자(심영희) 이 문제는 공간적으로 어느 한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필리핀에서 발표할 때 이는 남의 나라가 아닌 매우 친숙한 느낌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이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2천년 법정은 필요하다.

진실과 정의에 기초해서 하고, 앞으로도 전진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진실과 정의에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야한다. 제 3자의 개입을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유엔의 측면에서도 생각이 든다. 2천년 법정에도 유엔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천년 법정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계속이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다.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펴낸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
편집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펴낸날 1999년 9월 30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빌딩 3층(120-012)
전 화 365-4016, 392-5252,
F a x 365-4017
HomePage: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 jdh@peacenet.or.kr